

한국자활복지개발원 - 영광군
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협약서

영광군(이하 “지자체”라 한다)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은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, 자활근로 사업장 통합 운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 “개발원”, “지자체”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본 협약이 지원하는 사업(이하 ‘본 사업’이라 한다)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중앙자활자금	지자체 자부담	
		자부담 매칭금	자부담 초과분
소요 예산	1,000,000,000원	500,000,000원	400,000,000원

제4조(협약기간) 본 사업의 협약기간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협약 당사자의 역할)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“개발원”이 지원하는 업무와 “지자체”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붙임 협약서와 같다.

제6조(사업의 수행) “지자체”는 협약서 및 “선정심사” 후 최종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산의 임의 처분 금지) “지자체”는 본 사업의 지원으로 취득한 유형·무형자산은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“개발원”은 붙임 협약서 제10조(협약의 해지) 사유로 인하여 “지자체”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이의신청) “지자체”는 “개발원”에게 붙임 협약서 제11조(이의신청)의 사유에 관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 법령의 준수) “지자체”는 예산과 지출에 관한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붙임. 상세 협약서 1부.

본 협약은 상세 협약서와 같으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4년 10월 7일



한국문화유산개발원

원장 정해식

정해식



영광군

군수(代) 김정섭

김정섭

한국자활복지개발원 - 강서구
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협약서

강서구(이하 “지자체”라 한다)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은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, 자활근로 사업장 통합 운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 “개발원”, “지자체”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본 협약이 지원하는 사업(이하 ‘본 사업’이라 한다)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중앙자활자금	지자체 자부담	
		자부담 매칭금	자부담 초과분
소요 예산	1,000,000,000원	500,000,000원	0원

제4조(협약기간) 본 사업의 협약기간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협약 당사자의 역할)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“개발원”이 지원하는 업무와 “지자체”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붙임 협약서와 같다.

제6조(사업의 수행) “지자체”는 협약서 및 “선정심사” 후 최종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산의 임의 처분 금지) “지자체”는 본 사업의 지원으로 취득한 유형·무형자산은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“개발원”은 붙임 협약서 제10조(협약의 해지) 사유로 인하여 “지자체”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이의신청) “지자체”는 “개발원”에게 붙임 협약서 제11조(이의신청)의 사유에 관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 법령의 준수) “지자체”는 예산과 지출에 관한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붙임. 상세 협약서 1부.

본 협약은 상세 협약서와 같으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4년 10월 7일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원장 정해식

정해식



강서구 강서구

구청장(代) 박대우

박대우

한국자활복지개발원 - 장성군
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협약서

장성군(이하 “지자체”라 한다)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은 2024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 지원, 자활근로 사업장 통합 운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 “개발원”, “지자체”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본 협약이 지원하는 사업(이하 ‘본 사업’이라 한다)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중앙자활자금	지자체 자부담	
		자부담 매칭금	자부담 초과분
소요 예산	1,000,000,000원	500,000,000원	0원

제4조(협약기간) 본 사업의 협약기간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협약 당사자의 역할)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“개발원”이 지원하는 업무와 “지자체”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붙임 협약서와 같다.

제6조(사업의 수행) “지자체”는 협약서 및 “선정심사” 후 최종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산의 임의 처분 금지) “지자체”는 본 사업의 지원으로 취득한 유형·무형자산은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“개발원”은 붙임 협약서 제10조(협약의 해지) 사유로 인하여 “지자체”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이의신청) “지자체”는 “개발원”에게 붙임 협약서 제11조(이의신청)의 사유에 관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 법령의 준수) “지자체”는 예산과 지출에 관한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붙임. 상세 협약서 1부.

본 협약은 상세 협약서와 같으며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4년 10월 7일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

원장 정해식

정해식



장성군

군수(代)

곽영호

장성군

곽영호